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(법률 제18539호, 2021.11.30. 공포, 2022.6.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‘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’[시행규칙 별표 4]이 해양폐기물 수거 업무에 소유선박의 고장·결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선박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단순히 해양폐기물 적재·이동 등 폐기물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임차선박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를 규정(안 제19조의2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채용인원, 근로조건 등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하고,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안폐기물 수거·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

나. 해양폐기물수거업의 선박임차 허용요건 완화(안 별표4)

해양폐기물의 적재, 이동 등 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임차선박 사용 가능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

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, 근로조건,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안폐기물 수거·처리
2.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
3. 그 밖에 바닷가 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4 제2호 비고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해양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(폐기물의 적재, 이동 등)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9조의2(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)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인원, 근로조건, 응시원서 접수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해안폐기물 수거·처리 2.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3. 그 밖에 바닷가 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별표 4 2. 해양폐기물수거업	별표 4 2. 해양폐기물수거업

비고 8. 설비 또는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의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. 가·나 (생략) <신설>	비고 8.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다. 해양폐기물 인양 업무를 지원(폐기물의 적재, 이동 등)하는 목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	
연 락 처	044 - 200 - 5301